

화환신용장거래에서 물품명세의 일치성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Complying Requirements of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김종철(Jong-Chill Kim)

신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서류심사기준과 심사의무 | 참고문헌 |
| III. 물품명세의 일치성 요건에 관한 사례 | Abstract |
| IV. 평석 및 실무적 시사점 | |

Abstract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are judged by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The compliance of the tendered documents with the credit's terms ensures the proper completion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But if the documents tendered by beneficiary differ, a discrepancy of documents occurs. Such a discrepancy raises difficult problems for the bank to which the documents are tendered. It has to decide whether to reject or accept them or to accept them under a protective mechanism.

Therefor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 study of complying presentation of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documentary credit through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s.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 :

1. To examine two point of views on document compliance such as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2. To analyze Korean Case Law which challenges the legal conclusions,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and New ISBP.
3. To draw out the criterion for conformity and discrepancy of description in invoices and L/C and to provide the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 nature and extent of an issuing bank's duty of documentary compliance.
4. Finally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Korean case law.

By using the examination standards for description of goods suggested in Korean Case Law and New ISBP, the traders will be able to prepare documentation more perfectly and document checkers will be able to examine the negotiation documents more easily.

Key Words : Requirements of Compliance,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 본 연구는 신라대 경영경제연구(2008년 2월)에 발표된 논문을 사례추가와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I. 서론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서류심사의 기준)에서는 “지정은행, 확인은행, 발행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고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서류심사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은행의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화환신용장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600)은 제14조에 무려 12개항에 걸쳐서 서류심사기준을 UCP 500보다 훨씬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도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일치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오랫동안 엄밀일치(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와 상당일치의 원칙(the 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이 양분되어 적용되어 왔다. 엄밀일치와 상당일치의 원칙을 적용하는 뚜렷한 기준은 아직까지 없으며, 양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법원의 판례에 따라 사실문제로 귀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정 UCP 600에서도 양자의 원칙을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반면, 과거에 비하여 상당일치의 원칙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¹⁾

다만 UCP 500에서 일치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것을 서류의 문면상의 일치성을 보충하는 조항으로써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 ISBP)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새롭게 규정한 이래, UCP 600에는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서류심사업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치하는 제시”는 신용장의 제조건, 본 UCP의 적용가능한 규정 및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 ISBP)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²⁾

이와 같이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어느 정도까지 신용장 조건에 엄격히 또는 상당히 일치하여야 하는지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치성’(compliance)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져 왔다. 게다가 은행이 서류심사를 할 경우 신용장 조건과 제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³⁾, 서류 상호간에 일치성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류 심사기준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용장지급여부에 관한 분쟁이 집중되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연구에서도 서류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 이들 중 김종철(2004)은 신용장거래의 일치성의 요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서류의 원본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였으며⁴⁾, 이천수(2000)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요건으로 완전성, 정규성, 연계성에 근거하여 서류조건을 분석하였다.⁵⁾ 그 외에도 ISBP에 입각한 상업송장의 심사기준을 소개한 연구(강원진, 2006, 서정두 2005)⁶⁾와 UCP

1) 이에 관한 논문은 김종철, “서류심사기준과 불일치서류의 통지관행의 변화요인과 시사점”,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9. 참조

2) UCP 600 제 2조 정의(definition).

3) 강원진, “신용장 조건과 서류심사 기준 검토”, 『무역상무연구』 제13권, 2000, p. 499.

4) 김종철,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요건과 일치성에 관한 판례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2004. 9, p.201-229.

500에 근거한 국제표준은행관습상의 서류의 일치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연구(채진익, 2000)가 있었다.⁷⁾

그러나 이들 연구는 서류와 관련된 일치성요건 내지 ISBP에 입각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례 3개를 분석한 후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유용성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아무튼 서류의 일치성 판단에 관한 학계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그 일치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은행이 서류의 일치성여부를 판단할 경우, 국제표준은행의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매우 함축적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문제의 본질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국내법원의 소송사건에서 명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은행이 대금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서류의 일치성 요건과 관련하여 서류 상호간 물품명세의 불일치가 서류상의 하자가 되는지 최근의 대법원의 판례 3개를 분석함으로써 판례의 의미와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방법론으로써 ICC의 공식 견해 및 ICC의 유권해석, UCP 600, ISBP, 국내 대법원의 판례의 견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서류심사기준과 심사의무

1. 서류심사에 대한 기본원칙

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의 일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류심사에 적용되는 일치성의 판단기준은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률원칙으로 정립되어 온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이 있으며, 여기에다가 UCP 500에서 최초로 도입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이 있다. 전통적으로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의 일치성(compliance)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양분되어 왔다⁸⁾.

① 엄밀일치(strict compliance) :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상의 조건과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률원칙을 말한다⁹⁾. 신용장거래에서 일치성의 판단기준으로 영미의 판례법을 기초로 형성된 엄밀일치의 기준과 상당일치의 기준에 의해 주로 적용되어 왔다. 이중

5) 이천수,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요건”, 『무역상무연구』 제13권, 2000, p.581-603.

6) 서정두, “수출거래에서 상업송장의 일치성의무에 관한 관습적 해석기준” 『무역상무연구』 제25권, 2005, 2, p.99-119.

7) 채진익, “국제표준은행관습상의 서류의 일치성판단기준”, 『무역상무연구』 제13권, 2000, p.631-655.

8) Carolyn Hotchkiss, “Strict compliance in Letter of Credit Law : How Uniform 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23, 1991, pp.295-297.

9) Clive Schmitthoff, *Export Trade*, Stevens & Sons, 1990, p.406.

대부분의 법원들은 전통적으로 엄밀일치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으며,¹⁰⁾ 미국의 대다수 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기준으로 삼고 있다.¹¹⁾ 미국의 법협회의 공식의견(official comments)에서도 신용장과 서류의 일치성여부는 엄밀일치의 기준을 옹호하고 있다.¹²⁾ 이러한 사실은 미국 통일상법전 제5편(5-108(a))에 ‘엄밀일치’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조건과 엄밀일치의 원칙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쟁점이 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판례를 내린 경우가 많다.

이 원칙은 일치의 기준으로 서류의 정규성 뿐만 아니라 발행의뢰인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의 문구, 문자에 이르기까지 일치하는 것을 요구한다¹³⁾. 즉 발행의뢰인의 지시사항은 반드시 엄격히 지켜져야 함을 의미한다.

② 상당일치(substantial compliance) : 엄밀일치를 다소 완화하여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실질적으로 일치하면 일치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법원은 형식이 본질을 우선하여서는 안된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즉 서류와 신용장 조건간에 형식적인 불일치가 존재하여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은행은 불일치로써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당일치의 원칙은 제시된 서류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면 은행은 문면상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일치 원칙은 그 기준과 범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은행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서 발행은행의 재량권(discretionary duty)에 어느 정도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은행의 재량권 행사는 제시된 서류의 문면상의 일치성만을 근거로 하는 독립추상원칙에 위배되므로 신용장의 본질을 왜곡시키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상당일치의 문제에 대해서 Dolan교수는 “서류심사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없다(the substantial compliance standard is no standard at all...)고 혹평하기도 한다.¹⁴⁾

이와 같이 엄밀일치와 상당일치의 원칙이 양립되어 이를 적용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측면에서 볼 때는 신용장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어느 쪽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위촉 내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UCP 600 제14조에는 서류심사기준(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을 상세히 규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James E. Byrene, "Letter of Credit", *The Business Lawyer*, Vol. 43, 198, p.1354.

11) Boris Kozolchyk, "Strict Compliance and the Reasonable Document Checker", *Brooklyn Law Review*, Vol. 55, 1990, p.46. ;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Wallen, Gorham & Lamont, 1996, p.602.

12) American Law Institute, UCC Revised Article 5 Letter of Credit, 1995, Article 5-108, Official Comments

13) 코졸척(kozolchyk)은 이를 신용장의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of the credit)이라고 표현하였다. Steven C. Rattner, "Letters of Credit: A Return to the Historical Documentary Compliance Standard,"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Vol.46, 1985, p.466.

14) John F. Dolan, "Strict Compliance with Letters of Credit : Striking a Fair Balance," *Banking Law Journal*, Vol.104, 1987, p.18.

2. UCP 600상의 서류심사기준

1) 은행의 서류심사의무

개정 UCP 600에서는 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서류심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은행의 서류심사의무는 UCP 600 14조¹⁵⁾에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를 구성하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그 제시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일치하는 제시”라 함은 “신용장의 제조건, 본 규칙의 적용가능한 규정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일치하는 제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¹⁶⁾ 여기서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는 제시인이 제시하는 서류를 심사할 때 은행은 일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3가지 요건으로 ① 신용장의 제조건, ② 본 규칙에서 적용가능한 조항, ③ 국제표준은행관행에 한정된다고 UCP 500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시”(presentation)는 발행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신용장에 의거하여 서류를 인도하거나 인도된 서류를 인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해보면 은행(지정은행, 확인은행,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on their face)일치하는지 접수된 서류를 신용장의 제조건, 본 규칙의 적용가능한 규정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일치하는지 여부를 서류만을 근거로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 서류의 일치성 판단기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치성 판단기준은 영미의 판례법을 기초로 형성된 엄밀일치와 상당일치의 기준에 의해 주로 적용되어 왔다. 이중 대부분은 법원에서 엄밀일치를 적용하고 있음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물론 엄밀일치라고 해서 글자 한자까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서류심사기준으로써의 엄밀일치는 신용장조건과 제시된 서류가 거울에 비치듯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이해 될 수 있기 때문에 Kozolchyk교수는 합리적 서류심사자 기준(reasonable document checker standard)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¹⁷⁾ 이러한 맥락에서 UCP 600은 일치성 판단기준으로 과거보다도 더 완화된 상당일치의 원칙을 다음의 여러 조항에서 반영

15)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a.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must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16) UCP 600 제2조 ;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17) Boris Kozolchyk, “UCC Article 5 Symposium : Strict Compliance and the Reasonable Document Checker,” *Brooklyn Law Review*, Vol.45, 1990, p.74.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UCP 600 14조 (d)

본 조의 취지는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내용(자료)이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제시된 다른 서류와 모순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제시된 서류내용이 신용장, 서류자체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 그 서류자체, 다른 요구된 서류 또는 신용장의 내용과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상충되어서는 아니된다(must not conflict with...)”고 된다고 규정하여 일치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2) UCP 600 14조 (e)

본 조항에서는 “상업송장 이외의 여타 서류에서 물품, 용역, 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에서의 이들 명세와 상충되지 않는 일반 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업송장 이외에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여타한 서류에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충돌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하여도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¹⁸⁾

(3) UCP 600 14조 (f)

한편 UCP 600 제14조 (f)항은 한 걸음 더 나가 일치성에 대해서 요구되는 기능이 충족되면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신용장에서 서류가 누구에 의해서 발행되고 서류의 자료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서류의 내용이 요구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면 은행은 제시된 대로 수리한다.”

이 내용은 신용장에서 서류의 발행자와 자료의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서류의 제목이나 명칭보다는 요구서류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ISBP(2002) 43항¹⁹⁾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도 실질적으로 신용장에서 서류의 명칭이나 서류의 문언 및 자료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제시된 서류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치하면 무방하다는 상당일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A. G. Davis,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Pitman, 1963, pp.178-179.

19) 예를 들어 “packing list”에 대한 신용장의 요구는 “packing note”, “packing and weight list” 등 또는 명칭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포장명세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수리가 가능하다.(ISBP (Pub. No. 681) 41)

Ⅲ. 물품명세의 일치성 요건에 관한 사례

1.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선화증권상의 물품명세가 다른 경우

본 사례는 신용장과 다른 선적서류상의 물품명세와 선화증권(Bill of Lading : B/L)상의 물품명세가 상이하게 기재함으로써 발생한 우리나라 대법원 2003.11.14 판례²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일치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건의 발단 및 개요

(1) 수출계약 및 신용장발행

국내법인 주식회사 웅천섬유(이하 '웅천섬유')는 중국 법인 지양수 오버시즈 그룹(이하 '지양수 오버시즈')과 폴리에스터 섬유원단(poliester filament yarn)을 수출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는 신용장(letter of credit)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지양수 오버시즈는 피고는행인 중국은행 지양수 지점에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였고, 지양수 지점은 2000. 4. 29.에 신용장조건이 수익자 웅천섬유, 신용장금액 미화 180,468달러, 최종선적일 2000. 5. 25.(2000. 6. 1.까지 연장됨), 물품명세 섬유원단 DKO2DBI-021의 11중(이 사건에서 문제된 'DKO2DBI-024' 는 없다.)으로 된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웅천섬유는 섬유원단을 2000. 5. 15.부터 6. 1. 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섬유원단을 각각 수출하였다. 그 중 2000. 5. 27. 미화 88,603.20달러 상당의 원단(이하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선적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2) 피고의 신용장대금 지급거절

웅천섬유는 2000. 5. 27. 원고 은행 마포지점에 미화 88,603.20달러 상당의 섬유원단 수출에 대한 환어음과 그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자, 이에 원고은행인 중소기업은행 마포지점은 이를 매입하였다. 원고는 2000. 6. 1. 피고에게 선적서류를 제시를 위하여 송부하였고, 2000. 6. 5. 피고에게 도착되었다. 피고인 중국은행은 2000. 6. 12. 위 선적서류 중 운송인인 세통해운항공주식회사가 작성한 선화증권(갑6-2, '이 사건 선화증권')의 물품 명세 중 일부가 'DKO2DBI-021'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 'DKO2DBI-024'로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2000. 7. 22. 선적서류를 반송하였다.

그런데 송부된 선적서류상에는 선화증권 이외에 상업송장, 보험증권, 포장명세서가 있으나, 선화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에는 물품 명세를 모두 'DKO2DBI-021'로 표시되어 있고, 오직 선화증권상

2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2 다 7770판결

에만 'DKO2DBI -024'로 기재되어 있다.

(3) 수출화물의 반출

한편, 본 신용장의 조건 중에는 ① 3통 중 2통의 무고장선적선화증권(clean B/L)을 요구하고, ② 선적후 즉시 3통 중 1통의 선화증권을 포함한 1세트의 비네고 서류일체를 직접 발행신청인에게 송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수익자증명서(certificate of beneficiary)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웅천섬유는 발행신청인인 지양수 오버시즈 앞으로 선화증권 원본 1통을 송부하였고, 그 후 지양수 오버시즈는 세통해운항공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아 처분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이 사건 선화증권에 있어서 물품의 명세를 "100% POLYESTER FILAMENT YARN TRICOT FABRIC"이라고 명시하여 일반용어로 기술하였으므로 이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하 구체적인 명세의 기재는 필요가 없는 것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선화증권상의 물품명세서상 숫자는 웅천섬유와 지양수 오버시즈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색상을 구분하기 위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주문물품 중에 'DKO2DBI- 024'라는 색상의 제품이 당초부터 없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선화증권상의 'DKO2DBI-024'의 기재는 단순한 오타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상업송장 등 다른 서류는 신용장의 기재와 일치하므로 피고가 이를 들어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원심²¹⁾의 판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 제37조 c항의 규정²²⁾들에 비추어 보면, 은행의 서류심사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명세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업송장상의 명세와 기타 서류상의 명세를 구별하여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조건상의 명세와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하지만, 기타 다른 서류상의 물품명세는 일반용어로 표시할 수 있고 또한 합치의 기준이 완화되어 서류 상호간에 모순만 없으면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그 일치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은 서류심사와 기준과 관련하여 실질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국제적인 은행표준 관행에 따라 서류의 문면상 기재에 관해서만 상당한 주의를 다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화증권의 물품 명세는 신용장과 엄격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기재가 되었다면 상업송장 등 다른 서류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신용장 조건과의 모순되는지 여부는 '① 각

21) 서울고등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나39048 판결

22) UCP 600 제14조 a항 및 18조 c항

서류가 다른 서류와 문면상 연결되고(연계성), ② 그 내용도 서로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일치성)'고 할 것이다.

선화증권의 'DKO2DBI-024'기재는 상업송장 등 다른 서류와 비교해 볼 때 물품명세의 뒷 숫자만 차이가 있지만, 신용장상의 물품명세, 상업송장 등 다른 서류에 기재된 물품명세 등에 비추어 볼 때 문면상 위 숫자의 차이는 색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의 차이는 경미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DKO2DBI-024'라는 물품이 매매주문서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²³⁾, 또한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에는 'DKO2DBI-024'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DKO2DBI-024'라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으로서는 'DKO2DBI-021'과 'DKO2DBI-024'는 색상이 다른 물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유인 '선화증권상의 물품명세의 일부에 관하여 'DKO2DBI-024'라고 기재된 부분은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그 차이가 경미하고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오타에 불과하여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신용장의 제시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치성의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 거래 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²⁴⁾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의 은행위원회(ICC Banking Commission)의 승인하에 결정한 '국제표준 은행관행(ISBP)'은 신용장 선적서류의 심사와 관련하여 단어나 문장에서의 철자오류 및 타자 실수(misspelling or typing error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²⁵⁾

“단어나 문장에 있어서의 그 의미에 영향을 주지않는 철자 오류 또는 타자 실수는 해당 문서를 하자 서류로 만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machine” 대신에 “mashine”, “fountain pen” 대신에 “fountan pen”, “model” 대신 “modle”과 같은 물품명세는 불일치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한다. 그러나 “model 321” 대신 “model 123” 과 같은 명세는 타자상의 오류로 간주되지 않으며 등 문서는 불일치를 구성한다”고 규정

23) 피고 은행에 대하여 실질거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2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697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각 참조.

25) ISBP(Pub. No. 681) 25.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상에서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 서류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오류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이 사건에서 선화증권의 경우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과 실제로 운송중인 화물의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가 법정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²⁶⁾, 선화증권에 일단 위와 같은 물품의 명세가 기재된 이상 이는 실제 운송중인 화물을 나타내는 중요한 법정기재사항으로서 신용장의 화물표시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선화증권에 기재된 물품명세와 신용장 상의 그것이 불일치하므로 단순히 숫자의 기재 하나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서류작성 과정에서의 단순한 오타나 오타로서 취급할 수는 없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과는 다른 색상의 물품에 대하여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와 같은 물품명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선화증권상의 기재는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선화증권상의 물품명세와 신용장 상의 물품명세 차이가 신용장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그 차이가 경미하고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오타에 불과하여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용장 선적서류의 심사에 있어 엄격일치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신용장과 상업송장상에 기재된 물품명세가 다른 경우

본 사례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가 상이하게 기재함으로써 발생한 우리나라 대법원 2006. 5. 12 판례²⁷⁾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일치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6) 상법 제812조 제1항 제2호 참조 : 본 사건의 선화증권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었음.

27)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4158 판결 【양수금】 【공2006.6.15.(252),1017】

1) 사건의 발단 및 개요

(1)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

- ① 동남은행은 1997. 4. 11. 피고 2 회사²⁸⁾의 무역거래에 관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 ② 동남은행은 1997. 4. 11. 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입거래 등에 관하여 피고 2 회사가 제출하는 신용장 발행신청서(조건변경신청서 포함) 등의 기재사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한 다음 통지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을 통하여 중국의 수익자에게 통지하였다.

(2) 신용장의 조건변경

동남은행은 피고 2 회사에게 4건의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순번에 따라 '제1신용장', '제2신용장' 등으로 약칭함)을 발급하였는데, 위 각 신용장에 대해서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93년에 개정한 신용장 통일규칙(UCP 500)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그 후 위 각 신용장 조건 중 최종선적기일, 유효기간, 금액 등이 아래와 같이 연장·변경되었다.

<표 1> 관련 신용장 변경일자 변경된 내용

번호	관련신용장	변경일자	변경된 내용		
			최종선적일	유효기간	금액
1	제1신용장	1997. 8. 4.	1997. 8. 10.	1997. 8. 20.	-
2	제2신용장	1997. 8. 22.	1997. 9. 10.	1997. 9. 20.	-
3	제3신용장	1997. 8. 23.	1997. 9. 10.	1997. 9. 20.	-
4	제4신용장	1997. 8. 29.	-	-	\$ 322,100

(3) 선적서류의 도달 및 대금지급

상기 신용장의 통지은행인 중국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화증권 등 선적서류와 화환어음을 매입한 후 동남은행에 그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하였고,²⁹⁾ 동남은행은 그 대금 전액을 위 중국은행에 지급하였다.³⁰⁾

28) 본 사건에서는 피고회사가 복수로 존재하였음

29) 제3신용장에 의한 물품의 선적은 그 신용장 발행조건에서 허용된 바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 선적되어 그 선적서류가 분리 매입되어 대금청구가 이루어졌다. 이하 순서대로 3-a 선적서류, 3-b 선적서류 등으로 약칭한다.

30) 제2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의 매입가액이 신용장의 금액한도 \$29,000을 초과하는 데 대해서는 동남은행이 1997. 9. 23. 피고 2 회사로부터 그 매입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았고, 제4신용장의 금액도 신용장의 한도액을 초과하지만 신용장에서 허용한 과부족 범위인 5%를 넘지는 않는다.

(4) 계약이전결정 및 연체이율의 결정사항

- ① 피고 2 회사는 위 각 신용장 대금 지급 다음날부터 동남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동남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은 1997. 9. 3.부터 1997. 12. 1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8. 1. 15.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8. 6. 28.까지는 연 25%로 하였다.
- ② 원고는 1998. 6. 29.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동남은행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위 각 신용장 대금상환채권과 미수이자채권을 양수하였고, 1998. 11.경 피고 2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 ③ 원고가 위 채권양수를 한 이후인 1999. 1. 1.부터의 연체이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이자율 결정에 따라 원고의 고시이율인 연 18%가 적용된다.

(5) 신용장대금 상환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남은행은 이 사건 지급보증 및 수입거래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피고 2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1, 3은 연대하여 동남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신용장 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 제3신용장과 상업송장의 물품 불일치 주장

- ① 피고들은, 동남은행이 제3신용장에 의하여 매입한 상업송장의 물품 명세가 신용장에 지정된 품목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② 이에 이 사건 제3신용장의 품목 기재와 원고가 매입한 상업송장의 품목 기재가 서류의 외관상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3신용장에 기재된 물품목록은 별지 4 기재와 같고,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목록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 제3신용장에 기한 최초 선적분인 3-a 상업송장 : 별지 4-A의 순번 1 내지 4항은 신용장 기재 품목과 일치하나, 5항은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에 'FRESH COD'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6항의 'FRESH HAIR TAIL'은 신용장에는 외관상 일치하는 기재가 없다.
- ㉡ 제2차 선적분인 3-b 상업송장 : 별지 4-B 기재와 같이 순번 1항은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에 'FRESH'가 부가되어 있고, 순번 2 내지 7항은 신용장에는 일치하는 품목 기재가 없다.
- ㉢ 제3차 선적분인 3-c 상업송장 : 별지 4-C 기재와 같이 신용장 기재와 외관상 일치하는 품목이 전혀 없다.

(7) 신용장과 상업송장상의 물품기재내용

따라서 위와 같은 신용장 기재와 상업송장 기재의 차이가 피고들이 원고의 신용장대금 상환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는지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최초 선적분인 3-a 상업송장 부분 : 상업송장에 ‘OTHER KIND OF FISH’다음에 ‘FRESH COD’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라는 물품의 개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단가 등 다른 물품명세 기재에 의하여 문면상 물품의 동일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상업송장에 위와 같은 정도의 생선종류 표시가 첨가된 것을 가지고 물품명세에 관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거나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업송장 6항의 ‘FRESH HAIR TAIL’은 별지 4의 신용장 물품목록 1 내지 4항의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5·6항의 ‘OTHER KIND OF FISH’ 또는 ‘TOP SHELLS AND OTHERS’ 중 어느 하나에는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그와 같은 종류의 물품거래에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은행원이 서류의 문면만을 기준으로 식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목록은 신용장 기재 물품목록과 외관상 불일치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은행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매입대금에 대해서는 피고 2 회사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제2차 선적분인 3-b 상업송장 부분 : 상업송장의 순번 1항 기재 ‘OTHER KIND OF FRESH FISH’는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라는 물품의 개념을 축소한 것으로 단가 등 다른 물품명세 기재에 의하여 문면상 물품의 동일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물품명세에 관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거나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외의 순번 2 내지 7항 기재 물품명칭은 신용장조건과 전혀 다른 기재이고, 이를 모두 신용장의 물품목록으로 기재된 ‘OTHER KIND OF FISH’와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동남은행이 위 상업송장에 기한 선적서류를 매입한 데 대해서는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의 판단³¹⁾

(1) 법원의 판단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에 기재된 “HAIR TAIL”(갈치), “YELLOW CONVINA, WHITE CONVINA”(조기), “CHUB MACKEREL”(꽂치), “COD”(대구), “EASTERN FLAT HEAD”(양태) 등은 모두 그 단가가 “\$2,200”이어서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단가 \$2,8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것들은 모두 어류로서 신용장에 기재된 “TOP SHELLS AND OTHERS”의 “OTHER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업송장이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이다.

31)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4158 판결 【양수금】 [공2006.6.15.(252),1017]

물품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만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의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한 장의 선화증권이 발행되어야 한다.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물품명세가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면 발행은행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한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또한 제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행은행으로서 마땅히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전부 거절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대금을 지급해 버린 경우, 그 위험은 발행은행이 부담하여야 하고 신용장 발행의뢰인에게 대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 판단근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상고이유로 다투는 이 사건 제3 신용장(번호: M1412707NS00228)과 제시된 제1, 2차 선적분 상업송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① 제1차 선적분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에 기재된 “FRESH HAIR TAIL”과 제2차 선적분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에 기재된 “YELLOW CONVINA, WHITE CONVINA”, “CHUB MACKEREL”, “COD”, “EASTERN FLAT HEAD”, “SEA RAVAN”, “HAIR TAIL”은 모두 그 단가가 “\$2,200”이어서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 (단가 \$2,8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한편, 위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목록 중 단가가 “\$2,200”인 것으로는 “TOP SHELLS AND OTHERS”가 있으나, 위 문구를 직역하면 “소라와 그 밖의 것”이 되고, 기타 어류에 대하여는 이미 위 신용장 조건에 “OTHER KIND OF FISH”라는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여기에서 “OTHERS”란 “소라에 준하는 것, 즉 조개류”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HAIR TAIL”(갈치), “YELLOW CONVINA, WHITE CONVINA”(조기), “CHUB MACKEREL”(꽂치), “COD”(대구), “EASTERN FLAT HEAD”(양태) 등은 모두 어류로서 이를 “TOP SHELLS AND OTHERS”의 “OTHER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 2차 선적분 상업송장은 위 제3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신용장상의 물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상업송장에 누락된 경우

본 사례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란에 물품명세와 포장상태를 기재되어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누락되고 포장명세서상에 동일하게 기재함으로 발생한 우리나라 대법원 2006. 4. 28 판례³²⁾를 분석하고자 한다.

32)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다6327 판결【수출신용보증금】

1) 개요

최근 대법원은 2006. 4. 28 선고(2005다 6327)판결(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신용장의 물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명세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인 포장명세서에 신용장과 동일한 포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하여 상업송장의 하자를 보완할 수는 없으므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본 판결은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의 예외 및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석된다.

2) 상고기각 이유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의하면,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으로서는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in accordance with)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심사할 의무가 있고,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c항에 의하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물품명세에 관한 기재는 다른 서류의 물품명세와는 달리 엄격하게 신용장기재와 일치하여야 한다³³⁾.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용장의 물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는 물품 자체를 특정하는 제한적 기재로서 상업송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명세에는 이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물품명세는 이 사건 신용장 기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상업송장이 아닌 별도의 첨부서류인 포장명세서에 이 사건 신용장과 동일하게 포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하여 상업송장의 하자를 보완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신용장의 기재와 상업송장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일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 참조.

IV. 평석 및 실무적 시사점

1. 평석

1) 다른 물품의 존재여부

첫 번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화증권의 물품명세가 신용장과 다른 경우 이들 명세가 동일품인가 다른 물품인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본 건의 경우 물품명세가 신용장과 상업송장에는 “섬유원단 DK02DBI-021”, 선화증권에는 ‘DK02DBI-024’라고 기재되어 있고, 섬유원단의 마지막 숫자는 기록상 원단의 색상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그런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른 제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그 제품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기록상 주장을 정정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서류기재상의 오타여부

첫 번째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DK02DBI-024의 색상 원단은 주문제품에 없고 운송인이 선화증권 발행시 타이프 오류로 인하여 “1”자를 “4”로 타이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K02DBI-024’는 DK/BROWN이고, ‘DK02DBI-021’는 CHOCO/BROWN으로 색상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오타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오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어나 문장에서 그 의미에 영향을 주지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3) 타이핑상의 오류에 대한 ICC의 유권해석

(1) 타이핑상의 오류가 하자로 인정된 사례

ICC는 서류의 상호간 일치성에 관한 유권해석 및 공식의견을 몇 가지 낸바 있다.³⁴⁾ ICC는 공식의견에서 다음과 같은 사소한 타이핑 잘못이 있을 경우 서류상의 하자를 구성하는지 질의를 받았다³⁵⁾.

- ① 상업송장의 수익자의 주소의 우편번호를 “2056” 대신에 “0256”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서류상의 하자가 성립되는지? 이에 대하여 우편번호는 우편의 목적상 기재되는 것으로 “누가 상업송장을 발행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상업송장의 서류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견해를 피력하였다.
- ② 항공화물운송장의 수익자 주소가 “Industrial Park” 대신에 “Indusrtial Parl”이라고 기재된 경우, 이 주소를 “Indusrtial Parl”이라고 이해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자판상의 “K” 바로 옆이 “1”인점으로 보

34) 여기에 대한 설명은 채동현, “신용장관련 선적서류의 오기와 서류상 하자여부” 금융, 2004에서도 소개되어 있다.

35) Gray Collyer & Ron Kalz,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lishing Co., 2002, p.121-122.(R 209)

- 아 이는 명백한 타이프상의 오류이며, 항공화물운송장은 서류상의 하자가 성립된다고 하였다.³⁶⁾
- ③ ICC의 또 다른 유권해석³⁷⁾에서도 “발행은행이 신용장 발행시 수익자의 이름을 실수로 오자표기 하였으나, 통지은행이 수익자의 정확한 이름을 서류송부 명세서상에 확인하였다면 수익자의 정확한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는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이름의 잘못된 표기는 잘 못표기된 이름의 사람이 동일한 주소에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본건의 경우와 같이 통지은행이 서류송부명세서상에서 이름 표기가 오자임을 확인하였다면, 정확한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 ④ ICC에³⁸⁾ “신용장에 송장번호가 ‘DC99-578AB’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수출상은 2개의 컨테이너로 선적함에 따라 송장번호를 ‘DC99-578A’와 ‘DC99-578B’로 각각 명시한 상업송장 2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고 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다. 이에 대하여 ICC는 제시된 자료의 근거로 살펴볼 때, 신용장에 명시된 송장번호는 하나의 송장에 대한 한 개의 번호로 간주되어야 한다. 신용장을 수령한 수출상은 명시된 번호가 계약시 언급한 2개의 송장번호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출상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하나의 송장번호가 아닌 각각의 송장번호로 작성된 2개의 상업송장을 제시하였으므로 발행은행의 부도처리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한편 선적서류에 대한 정비가 없고 신용장에서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일 수출상이 2개의 운송서류를 신용장에서 명시된 송장번호가 기입된 하나의 상업송장을 제시하였다면 발행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사례는 상업송장의 번호는 동일물품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서류작성시의 오자에 대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사례에서는 다른 서류와 달리 상업송장은 신용장조건과 엄밀히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⑤ Pasir Gudang Edible Oils SDN vs. Bank of New York

신용장에서 도착항을 “Ilychevsk”로 명시하였으나 선화증권에는 이것이 “Ilychev나”로 기재되어 “i”가 누락되었다. 그러나 “Ilychev나”와 동일지명의 항구가 다섯 곳이나 있어서 화물이 신용장상 도착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운송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대금지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³⁹⁾

(2) 타이핑상의 오류가 하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 ① 항공화물운송장에 통지처 기재란에 성(surname)을 “chan” 대신에 “chai”로 기재한 경우, 동일한 주소에 “chai”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서류상의 하자에 해당한다.⁴⁰⁾

36) op.cit. pp.121-122.

37) ICC Document 470/TA 49(2000. 3. 6)

38) ICC Document 470/TA 38(2000. 2. 22)

39) Index No 603531/99(N.Y supp. ct, 1999, USA)

40) Gray Collyer & Ron Kalz,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lishing Co., 2002,

② 2000에도 ICC의 은행위원회에 “신용장상의 물품명세가 ‘single core conductor PVC BS60004.1097’으로 되어 있었는데, 매입은행이 제시한 상업송장의 물품명세가 ”single core conduct PVC BS6004/1097-Eurocab Brand on reels’와 같은 물품의 세부적인 부연설명은 하자로 간주되는가’라고 질의가 있었다. 신용장통일규칙에 37조⁴¹⁾에 따르면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의미는 상업송장의 물품명세가 반드시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일치한다고 해서 송장상의 물품명세가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자구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상에 물품의 명세가 부연 설명되었으나 상업송장에서 부연설명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불일치되나 신용장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추가정보가 송장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신용장과 제시된 다른 서류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하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⁴²⁾

4) 상업송장이나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의 기타(other kind of fish)예석

상업송장의 최초 선적분의 ‘OTHER KIND OF FISH’ 다음에 ‘FRESH COD’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지만, 앞에 열거된 물품이 동일군으로 단가가 동일하여야 일치성이 있으며 이것이 다를 경우 문면상 동일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 개정된 ISBP 60에도 “송장에 나타난 단가와 통화는 신용장에 나타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장상의 기재물품의 기타(TOP SHELLS AND OTHERS)의 해석도 앞에 열거된 소위 동종제한의 원칙이 적용되는 “소라와 그 밖의 것”이 되고, “기타 어류”(OTHER KIND OF FISH)와는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이라고 볼 수 있다.

2. 실무적 시사점

무역거래에서의 상업송장은 선적품에 대한 대금청구서, 물품의 명세서, 견적서의 역할을 하며,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의 구매서로 사용된다. 그리고 통상적인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필수서류로 인식되고 있다.⁴³⁾ Incoterms상의 13개 정형거래조건에서도 매도인의 의무중 A1에서 상업송장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업송장은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조건 이행여부가 기재되는 기본서류로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운송서류, 보험서류와 달리 상업송장은 수출업자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은행이 송장

p.121-122.(R 209)

41) UCP 600 제18조 c항

42) ICC에서는 Opinions(1980-1981)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pp. 35-36. R. 81과 ICC Document 470/TA 41(2000. 3. 24)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43) Leo D'Arcy et al., *Schmitthoff's Export Trade*, 10th ed., Sweet & Maxwell, 2000, pp.125-128.

의 기재내용을 비증있게 심사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다른 서류에 비해서 상업송장이 다소 엄격한 일치성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⁴⁴⁾

이상의 사례를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품의 명세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업송장상의 명세와 기타 서류상의 명세를 구별하여 일치성을 적용하고 있다. 즉,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조건상의 명세와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하지만, 기타 다른 서류상의 물품명세는 일반용어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일치 기준이 완화되어 서류 상호간에 모순만 없으면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반드시 신용장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하나 경상의 원칙(*mirror image*)이 적용될 만큼 완전히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업송장은 매수인에게 선적인 물품이 약정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이 상업송장에 표시되는 물품의 명세는 발행의뢰인이 요구한 물품의 명세, 즉 신용장상에서 요구된 물품의 명세와 꼭 일치하여야 한다.⁴⁵⁾ 이러한 취지로 UCP 600 제18조 (c)는 “상업송장상의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에 보이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must correspond with ...*)”고 명문화함으로써 엄밀일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ISBP(2007) 58항 “송장의 물품명세는 반드시 신용장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것은 거울에 비치는 것과 같이 경상의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다.⁴⁶⁾

둘째,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실제 선적된 물품의 종류를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장상의 물품명세가 트럭 10대와 트랙터 5대이고, 실제로 선적된 것이 트럭 4대인 경우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에는 트럭 10와 트랙터 5대가 아닌 실제로 선적된 트럭 4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셋째, 상업송장에 표시된 수량, 중량, 용적 등의 표시는 다른 서류에 나타난 표시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상업송장상에 표시된 물품의 수량, 중량, 용적 등은 선화증권이나 수량/중량증명서 등과 같은 기타 서류상의 수량, 중량, 용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세관송장, 영사송장, 검사증명서, 중량/용적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역증명서 등의 부수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는 요구되는 서류 모두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서류간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UCP 500 제21조⁴⁸⁾에서는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그러한 서류의 발행자, 서류의 문언 또는 자료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에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의

44) 강원진, “신용장거래에서 ISBP의 상업송장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1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12, p.125.

45) Clive Schmitthoff,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7th ed., Stevens, 1980 p.219.

46) 이러한 견해는 ICC, *Opinions(1980-1981) of the ICC Bankig Commission*, pp.35-36. R.81,과 우리나라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 697판결과도 같다.

47) ISBP (Pub. No. 681) 59.

48) UCP 500 Art. 21:When documents other than transport documents, insurance documents and commercial invoices are called for... bank will accept such documents as presented. provided that their data content is not inconsistent with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s presented.

자료내용이 제시된 그 밖에 명시된 서류와 모순되지 않으면 제시된 대로 수리한다”고 부수적인 서류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신용장과 선화증권의 물품명세가 단순한 숫자상의 오기 내지 오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어 나 문장에서 그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취지는 ISBP(681)에 반영되어 오타 또는 타자오류(misspelling or typing errors)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⁴⁹⁾ “단어나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오자 또는 타자오류는 서류를 불일치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machine”대신에 “mashine”, “fountain pen” 대신에 “fountan pen” 또는 “model” 대신에 “modle”과 같은 물품명세는 그 서류를 불일치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한다. 그러나 “model321” 대신에 “model123”과 같은 명세는 타자오류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불일치를 구성한다”.

다섯째,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에 열거된 “○○물품 및 기타 등등”은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의 종류 및 기타 등등”과는 동종성이 있고 신용장의 단가가 상업송장상의 단가와 일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에 누락된 경우 설령 포장명세서상에 신용장과 동일한 포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도 상업송장의 하자를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항은 ICC의 유권해석과 다소 상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⁵⁰⁾ ICC질의 사항 중에 “포장명세서에 물품명세가 없이 상업송장에 있는 물품수량, 색상번호(style no) 및 송장번호를 표시하고 있었는데 물품명세가 없는 포장명세서가 하자인가?” 라는 질의에 대해 “포장명세서상에 물품명세가 없더라도 하자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이유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의 정보내용 간에는 충분한 연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ICC는 해석하면서 이러한 해석이 이변과 같은 특수한 질문에만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V. 결 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앞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3개는 UCP나 ISBP의 취지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첫번째 사건의 경우 서류심사의 의무를 갖고 있는 은행은 물품명세서의 마지막 숫자가 다른 물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며, 또한 실제로 다른 명세서의 숫자가 다른 물품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한 타이핑상의 오류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서가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서와 일치해야 하며, 선화증권을 포함한 기타서류에서는 상충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를 기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49) ISBP(Pub. No. 681) 25.

50) ICC Banking Commission, Official Opinion R442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상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 서류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기재상의 불일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오류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⁵¹⁾

신용장과 선화증권상의 물품명세가 불일치할 경우에도, 선화증권에 물품의 명세는 기재된 이상 운송 중인 화물을 나타내는 중요한 법정기재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장상의 명세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상법 812조 1항 2호에는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가 선화증권의 법정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는 선화증권의 기재된 화물과 실제로 운송되는 화물의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다. 선화증권에 기재된 물품명이 신용장의 물품과 숫자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단순한 오타인지 여부는 내용상 의미상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는 ISBP와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에 누락된 경에는 포장명세서에 신용장과 동일한 포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도 하자로 간주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3개의 사례와 실무적 시사점을 언급하였지만 무역거래시에 더욱 중요한 사항은 수출상 송장의 물품명세를 신용장상의 그것과 자구까지 일치시키는 것이 사후 물품명세의 일치성여부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길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신용장조건과 서류심사의 기준검토”, 『무역상무연구』 제13권, 무역상무학회, 2000. 2.
 김영훈, “스탠드바이 신용장통일규칙(ISP 98)과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과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3권, 2000.
 김종철,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요건과 일치성에 관한 판례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9.
 김종철, “서류심사기준과 불일치서류의 통지관행의 변화요인과 시사점”,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9.

5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다63883 판결 등 참조.

- 서정두, “신용장거래에서의 일치성판단에 관한 표준관습의 해석”,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 이천수, “화환신용장 거래에서의 전통적인 서류심사기준하의 서류일치성 요건”, 『무역학회지』 제25권 3호, 2000. 9.
- 이천수,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요건”, 『무역상무연구』 제13권, 무역상무학회, 2000. 2.
- 채진익, “국제표준은행관습상의 서류의 일치성판단기준”,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2
- 채동헌, “신용장관련 선적서류의 오기와 서류상 하자여부” 『금융』, 2004
- 한주섭, 최신신용장론, 동성사, 1994.
- 小峯 登, 1974年 信用狀統一規則(上),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77.
- 伊澤孝平, 商業信用狀論, 有斐閣, 1962.
- 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96.
- 정용혁·지정준,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 해설서』, 신생컴뮤니케이션, 2007.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 다 34158판결(양수금)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 7770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4. 6. 3. 선고 2003나 11547판결(양수금)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 다카 696 판결,
1985. 5. 28 선고 84 다카 697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 30026판결,
2002. 6. 28 선고 2000다 63691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 다 56178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 다 63691 판결참조.
- 서울고등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나 39048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 99나 68425.
- American Law Institute, *UCC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 1995.
- Aster, C.E., *A Practical Guide to Letters of Credit*, Executive Enterprises Publications Co., Inc. 1990.
- Busto, Charles del,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 Busto, Charles Del, *Position Papers No. 1234*, Published by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on Sept. 1, 1994
- Byrne, James E., “Revised UCC Section 5-108(e) :A Constitutional Nudge to Courts”,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114., 1997.
- de Rooy, F.P., *Documentary Credit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4.
- del Busto, C., *Position Papers No. 1,2,3,4*, published by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 Practice on Sept. 1, 1994
-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2nd ed. Warren, Gorham & Lamont, 1991.
- Ellinger, E.P.,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1970.
- Gustavus, Joseph D., "Letter of Credit Compliana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UCCLJ*, 1997.
- Harfield, Henry., *Letter of Credit, Uniform Commercial Code, Practice Handbook 5*, American Law Institute, 1980.
- Harfield, Henry., "Code, Customs and Conscience in the Letter of Credit Law",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1971.
- Hotchkiss, Carolyn, "Strict compliance in Letter of Credit Law : How Uniform 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23., 1991.
- Kozolchyk, B., *Commercial Letters of Credits in the America: A Comparative Study of Contemporary Commercial Transactions*, Matthew Bender & Co., 1976.
- Kozolchyk, Boris., "Re UCP Article 13(a) &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s Initiative", *Letter of Credit Update*, vol.11., No. 11, 1995.
- Kurkela, M., *Letters of Credit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UCC, UCP and Law Merchant*, Oceana Publications, Inc., 1985.
- Rattner, Steven C., "Letters of Credit : A Return to the Historical Documentary Compliance Standard",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Vol. 46. 1985.
- Schmitthoff, C.M.,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9th ed. Stevens & Sons, 1990.